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주권의 날’ 지정〉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90호)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선원 · 김승원 · 장종태 · 이재관 · 권향엽 · 이훈기
김상욱 · 주철현 · 전현희 · 이광희 · 민병덕 · 이수진
박용갑 · 백승아 · 손명수 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5. 10. 29.

3. 회 부 일 : 2025. 10. 30.

※ 의안번호 : 1379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과거 군사정권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지시하였음.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음. 시민들은 평화적 방법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에 항거하였고, 이들의 헌정수호 의지와 조직된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신속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음.

이에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이 기념행사, 학술·교육행사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국민주권의 날) ①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에 평화적 방법으로 항거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주권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국민주권의 날 기념행사 2.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발전, 헌정질서 수호 관련 학술·교육행사 3.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발전, 헌정질서 수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등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우리나라 국경일 및 기념일의 체계를 살펴보면, 국가가 지정하는 국경일과 정부 및 국회가 각 지정하는 기념일로 구성됨.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 등 5개가 지정되어 있고, 정부의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57개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147개 등

총 204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회의 경우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 (국회규정)」에 따라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 국회 개원기념일 및 제헌절 등 3개가 지정되어 있음(국경일·기념일 세부 현황은 p.8 이하 참조).

[표-2] 우리나라 국경일 및 기념일 체계

구 분	국경일	기념일	
		정부	국회
지정 현황	5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7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3개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 국회 개원기념일, 제헌절)
		약 147개(개별 법률)	
근거	「국경일에 관한 법률」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 개별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구장보건법」 등)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대해 시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려는 것으로, 매년 입법부의 책임성을 재확인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및 국회의 역할을 널리 알려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국민주권의 날’을 국회의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인데, 이를 ‘국경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기념일로 지정할 경우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당사자이자 저항의 중심이었던 국회가 기념의 주체가 되어

입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매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선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임.

다만, 이를 국경일로 지정할 경우 국회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12·3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상징성과 위상을 부여하고, 전국 단위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념행사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각 설정하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623호)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627호)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3] 국경일·공휴일 설정 관련 개정안(2건)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국경일의 종류) ----- -----. 1. ~ 5. (현행과 같음) 6. <u>민주시민의 날: 12월 3일</u>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u>개천절</u> 및 <u>한글날</u> 2. ~ 10. (생략)	제2조(공휴일) -----. 1. ----- ----- <u>개천절</u> , <u>한글날</u> 및 <u>민주시민의 날</u> 2. ~ 10. (현행과 같음)

둘째, 개정안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인데, 기념 일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즉, 개정안이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려는 ‘12월 3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써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게 된 원인이 된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하여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됨으로써 실제 헌정질서 수호를 완료한 시점은 ‘12월 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911호)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국회개원기념일 등) ①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한다. ② 헌법수호 정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한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는 2024. 12. 4.(수) 00시 47분에 개의되어 01시 01분에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이후 0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음.

셋째, 개정안에 따른 경우 국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지정 근거의 체계상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회는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국회규정)」에 따라, ①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4. 10.), ② 국회 개원 기념일(5. 31.), ③ 제헌절(7. 17.) 등 3개의 기념일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권의 날’만 별도로 국회법에 근거하게 되어 지정 근거의 체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됨.

[표-5] 개정안에 따른 국회 기념일 지정 근거 체계

구 분	국회법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명칭(일시)	국민주권의 날(12.3.)	①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4.10.), ② 국회 개원기념일(5.31.), ③ 제헌절(7.17.)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나, 입법부의 개원을 기념하는 ‘국회 개원기념일’ 등이 ‘국민주권의 날’에 비해 헌정사적 또는 민주적 상징성 측면에서 그 위상이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정 근거의 위계가 상이할 경우 기념일 간 중요도나 위상이 차등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주권의 날’을 신설하여 지정할 경우 이를 계기로 현재 국회규정에 근거한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 ‘국회 개원기념일’ 및 ‘제헌절’ 등 국회 기념일 지정 근거 체계를 일원화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6

참고 1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연번	명칭	기념일	비고
1	3·1절	3. 1.	공휴일
2	제헌절	7. 17.	
3	광복절	8. 15.	공휴일
4	개천절	10. 3.	
5	한글날	10. 9.	

참고 2 국회의 기념일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

연번	명칭	기념일	기념식(행사) 주기
1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	4. 10.	1년
2	국회 개원기념일	5. 31.	1년
3	제헌절	7. 17.	1년

참고 3

정부의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연번	명칭	기념일	주관 부처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부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9	식목일	4. 5.	농림축산식품부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관광부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21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관광부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24	세종대왕 나신 날	5. 15.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
25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26	부부의 날	5. 21.	성평등가족부
27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성평등가족부

연번	명칭	기념일	주관 부처
28	우주항공의 날	5. 27.	우주항공청
29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30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31	환경의 날	6. 5.	기후에너지환경부
32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33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34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35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36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3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
38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39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40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4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42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4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44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관광부
45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46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47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48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49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50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부
51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52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 국가보훈부
53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식품부
54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55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
56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부
5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개별 법률상 기념일 : 약의 날(약사법), 소방의 날(소방기본법) 등 147개